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및 진급기준 완화〉
■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50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①: 부서관 재임용 관련 시행규칙 개정 추진 현황 ..	7
※ 참고자료②: 연도별 예비역의 현역 재임관자 현황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규백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16.
3. 회부연월일 : 2025. 6.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재임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또 재임용된 장교 및 부사관은 재임용 후 12개월 경과 후부터 재임용 전·후 경력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교 획득률이 극단적으로 저조한 데다 장기복무자 또한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바 초급간부의 보직률이 매우 낮아 국가안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규정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 재임용 간부의 복무기간 합산을 12개월 이후부터 가능토록한 현 규정이 불합리·불필요한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예비역 간부가 전역 후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통해 직무수행역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한 날로부터 6년까지 확대하여

간부 재임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 7. (생략) 7의2.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u>3년</u> 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8. (생략)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 ----- <u>6년</u> -----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 ⑤ (생략) ⑥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라 재임용된 장교나 <u>부사관이</u> 재임용된 날부터 <u>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한</u>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부사관의</u> ----- ----- -----

현행	개정안
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을 더하여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 -----.

- ☐ 현행 예비역 재임용 제도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중위 이상의 장교와 중사 이상 부사관¹⁾ 중 재복무를 희망하는 인원을 선발하여 다시 현역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됨.
- ☐ 동 제도에 따라 전역 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된 인원은 누적 1,874명²⁾이며, 2025년의 경우 8월까지 기준 182명(장교 58명·부사관 124명)이 재임관자로 선발됨.
- ☐ 최근 학군장교 지원율 저하 등으로 간부 획득률이 저조하고, 20년 이상 복무자의 명예전역 증가로 인해 장기복무자 이탈이 가속³⁾

1) 부사관은 동 제도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부사관의 임용)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1.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예비역 부사관
2.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 또는 예비역 병

2) 참고자료 참조.

3)

[최근 5년간 학군장교 지원율 현황]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학군 지원율	2.7:1	2.5:1	2.3:1	1.6:1	2.1:1

[최근 5년간 장교 및 부사관 명예전역 선발현황]

연도	구분	선발현황	
		지원(B)	선발(C)
2020년	장교	567	534
	부사관	609	560
2021년	장교	535	520
	부사관	706	649
2022년	장교	615	557
	부사관	1,128	730

되면서 군 간부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임용된 간부의 복무기간 합산을 12개월 이후부터 가능토록 한 현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한 날부터 6년까지로 연장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간부 재임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예비역 재임용 지원 가능 기간 연장은 모집 가용자원을 확대하고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법은 재임용된 날로부터 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해야 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복무기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재임용 시점부터 해당 복무기간을 합산하도록 하여 재임용 간부의 상위 계급 진급 지연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재임용 가능 기간을 확대하더라도 지원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2023년	장교	722	645
	부사관	1,642	957
2024년	장교	782	720
	부사관	1,720	1,216

않는다면 입법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특히 장기간 복무 공백이 있는 인원은 진급심사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재임용 인원 증가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둘째, 전역 후 6년까지 재임용을 허용할 경우 복무 공백이 길어져 군의 작전·전술 변화에 대한 재교육 소요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예산 부담과 행정적 소요가 증가할 수 있고, 이러한 인력이 군 전력의 신속한 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한편,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 시점이 불확실해 장교 진급심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국방부는 모집 가용자원 확대와 군 복무 경험을 가진 간부를 적시에 상위계급으로 진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나, 진급심사의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수정하자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 참고자료 ①: 부사관 재임용 관련 시행규칙 개정 추진 현황

현행	개정안
제14조(부사관의 임용) ① ~ ③ (생략) ④ (생략) 1.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u>3년</u> 을 넘지 아니한 예비역 부사관 2. (생략) ⑤ (생략)	제14조(부사관의 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 <u>6년</u> -----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상 장교의 임용은 「군인사법」에서, 부사관의 임용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방부에서는 현재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25. 6. 30. ~ '25.8. 11.) 중임.

※ 참고자료 ②: 연도별 예비역의 현역 재임관자 현황

□ 연도별 재임관자(계급별)

구 분		계	장 교		부 사 관	
			대 위	중 위	상 사	중 사
2013년	계	36	18	0	0	18
	육군	22	13	0	0	9
	해군	4	1	0	0	3
	공군	8	3	0	0	5
	해병대	2	1	0	0	1
2014년	계	47	4	24	0	19
	육군	25	2	14	0	9
	해군	7	1	3	0	3
	공군	8	1	5	0	2
	해병대	7	0	2	0	5
2015년	계	51	15	19	0	17
	육군	27	6	16	0	5
	해군	11	5	1	0	5
	공군	8	3	2	0	3
	해병대	5	1	0	0	4
2016년	계	80	6	25	0	49
	육군	56	4	20	0	32
	해군	12	2	2	0	8
	공군	7	0	2	0	5
	해병대	5	0	1	0	4
2017년	계	136	13	44	0	79
	육군	105	9	39	0	57
	해군	15	1	2	0	12
	공군	11	1	3	0	7
	해병대	5	2	0	0	3
2018년	계	185	21	36	0	128
	육군	149	13	33	0	103
	해군	14	3	1	0	10
	공군	11	2	2	0	7
	해병대	11	3	0	0	8

구 분		계	장 교		부사관	
			대 위	중 위	상 사	중 사
2019년	계	181	31	46	0	104
	육군	146	25	43	0	78
	해군	10	4	0	0	6
	공군	11	1	3	0	7
	해병대	14	1	0	0	13
2020년	계	222	31	48	0	143
	육군	175	22	46	0	107
	해군	10	3	1	0	6
	공군	10	4	1	0	5
	해병대	27	2	0	0	25
2021년	계	235	24	67	0	144
	육군	182	17	63	0	102
	해군	29	4	4	0	21
	공군	9	2	0	0	7
	해병대	15	1	0	0	14
2022년	계	162	29	36	0	97
	육군	111	23	36	0	52
	해군	14	0	0	0	14
	공군	17	4	0	0	13
	해병대	20	2	0	0	18
2023년	계	147	23	28	2	94
	육군	95	17	25	2	51
	해군	22	2	3	0	17
	공군	22	2	0	0	20
	해병대	8	2	0	0	6
2024년	계	210	47	41	9	113
	육군	165	38	38	9	80
	해군	16	5	0	0	11
	공군	18	3	1	0	14
	해병대	11	1	2	0	8
2025년 (8월까지)	계	182	38	20	12	112
	육군	153	36	19	12	86
	해군	13	1	0	0	12
	공군	8	0	0	0	8
	해병대	8	1	1	0	6